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5. 9. 9.(화) ~ 9. 11.(목)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5
■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3
■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총무과)	 31
■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식품위생과)	 55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71
(보육정책과)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95
(보육정책과)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113
(도시재생과)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43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 등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후생복지 사업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근거 삭제 : (안 제7조제10호)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u>	<u><삭제></u>
11. ~ 14. (생략)	11. ~ 14.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수반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오 근 선

[참고자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44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 반영과 그간 주민자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정비 : (안 제1조, 제5조, 제17조, 제20조)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 (안 제7조)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개선 : (안 제7조의2 및 제8조)
- 온라인 회의 운영 근거 마련 : (안 제15조)
-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조항 정비 : (안 제18조)
- 주민자치회 회계책임자 지정 관련 조항 정비 : (안 제3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일 또는 추천일”을 “공개모집 공고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의회”를 “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제7조제1항제4호의 자격으로 위원이 되고자 신청한 사람이 소속된 학교·기관·단체는 선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1.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명 이내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별 위원”을 “위원”으로, “아니하도록 노력하며”를 “않도록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를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6시간”을

“3시간”으로,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를 “이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자치회는”을 “선정위원회는”으로,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예비후보자”로, “추첨으로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순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난·재해상황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임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각각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주민자치회 간사는 위원이 아니어도 주민자치회 회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 예비후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는 이 조례에 따른 예비후보자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5조(기능) 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40조----- -----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일 또는 추천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공개모 집 공고일 ----- ----- -----. -----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 4. (생략)

② (생략)

<신설>

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제7조제1항제4호의 자격으로 위원이 되고자 신청한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며,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내)

이 소속된 학교·기관·단체는 선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1.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명 이내
-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위원 -----
----- 않도
록 하고-----

-----.

<삭 제>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
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해
당 학교·기관·단체·주민공
동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
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
다만, 선정된 위원의 수가 전
체위원의 40퍼센트에 미달될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정
원 범위 내 충원이 가능하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
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
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
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후단신
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
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
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천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④ ~ ⑦ (생략)

<삭 제>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

----- 3시간 -----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 실
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
----- 예비
후보자-----
-----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2명 이상이
면 그 순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
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u>주민자치회</u> <u>위원의</u> <u>공정한</u> <u>선정을 위하여</u> <u>주민자치회</u> <u>내에</u> <u>위원</u> <u>추첨</u> <u>운영위원회를</u> <u>구성</u> · <u>운영할</u> <u>수</u> <u>있다</u>.	<u><삭 제></u>
⑨ · ⑩ (생 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15조(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회의는</u> <u>대면회의를</u> <u>원칙으로</u> <u>하되</u>, <u>국가</u> <u>재난</u> · <u>재해상황</u> <u>등</u> <u>의 경우에는</u> <u>온라인회의를</u> <u>병행</u> <u>하거나</u> <u>대체할</u> <u>수</u> <u>있다</u>.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의 <u>위원은</u> <u>특별법</u> <u>제29조제2항</u> <u>에 따라</u> <u>정치적</u> <u>중립의</u> <u>의무를</u> <u>가지며</u>, 「<u>공직선거법</u>」 <u>제60조</u> <u>제1항제7호에</u> <u>따라</u> <u>선거운동을</u> <u>할</u> <u>수</u> <u>없다</u>.	제17조(정치적 중립) ----- ----- <u>특별법</u> <u>제40조제5항</u>- ----- ----- ----- -----.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u>제1항에도</u> <u>불구하고</u> <u>제8조제</u> <u>1항에</u> <u>따른</u> <u>위원</u> <u>선정</u> <u>절차에</u> <u>참여한</u> <u>인원이</u> <u>선정하려는</u> <u>위원</u> <u>의 수에</u> <u>미치지</u> <u>못하는</u> <u>경우에</u>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는 세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2년동안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 없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가 선정하려는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신 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④ ----- 제1항-----

-----, <후단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연임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6. (생략)

② (생략)

제33조(사용료 등) ① ~ ⑥ (생략)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단서 신설>

-----.

-----.

1.·2. (현행과 같음)

3. ----- 특별법 제40조제5항-----

4. 특별법 제40조제5항-----

--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용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⑧ (생 략)	<u>선임된 주민자치회 간사는 위원 이 아니어도 주민자치회 회계책 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u> ⑧ (현행과 같음)
----------------	---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7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오 근 선

[참고자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의안 번호	3145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청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 남동구청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6. 3. 1. ~ 2031. 2. 28.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남동구청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 입·퇴소관리 및 입소 영유아에 대한 제반 교육
 -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 시설물의 상태 유지 및 보수
 - 종사자 임면사항
 - 그 밖에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 현재 위탁기관 : 개인(원장 지수민)
 - 기 간 : 2021. 3. 1. ~ 2026. 2. 28. (5년)
- 사 업 비 : 3,467,229천원(5년간)

□ 참고자료

- 참고1 :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췌)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청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직장어린이집)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 : 2025년 보육사업안내
 - 2025년 이후 인건비 예산액은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는 2025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6년 ~ 2030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 인건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6년 ~ 2030년(5년)
- 발생비용 : 3,467,229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오 근 선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국시비보조금							
세 출		654,000	673,140	692,854	713,160	734,075	3,467,229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654,000	673,140	692,854	713,160	734,075	3,467,229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국비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구 비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남동구청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남동구청어린이집 교직원 평균 호봉 기준 승급에 따른 인상률(3%) 적용 추산

[참고자료1]

육아 걱정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총 무 과
[단체협력팀]

요 지

구청장 결재 나. 주요 시책 ·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 남동구청어린이집 개요

○ 기본 현황

- 개 원 : 2001. 6. 1.
- 위 치 : 남동구 소래로 633, 구청사 내
- 시설현황

연 면 적	실외놀이터	보육인력	학급 수	정 원	현 원
1,006.98㎡	314.32㎡	24명	12반	92명	58명

○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21. 3. 1. ~ 2026. 2. 28.
- 위 탁 자 : 개인 (원장 지수민)
- 위탁운영비 : 654,000천원(인건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6. 3. 1. ~ 2031. 2. 28. (5년)
- 모집방법 :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선정

□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 '25. 9월 (제306회 임시회)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5. 9월 ~ 10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5. 11월
- 위 · 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5. 12월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 ◆ 2026. 2. 위탁종료 예정인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육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 ◆ 육아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직장어린이집)
-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II 추진방향

-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용
- 수탁희망자의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위탁기준의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Ⅲ

남동구청어린이집 개요

○ 남동구청어린이집 기본 현황

- 개 원 : 2001. 6. 1.
- 위 치 : 남동구 소래로 633, 구청사 내
- 시설현황

연 면 적	실외놀이터	보육인력	학급 수	정 원	현 원
1,006.98㎡	314.32㎡	24명	12반	92명	58명

- 보육인력 : 총 24명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조리원	사무원	총 인원
1명	12명	8명	2명	1명	24명

○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21. 3. 1. ~ 2026. 2. 28.
- 의회동의 : 2020. 9. 9.
- 위 탁 자 : 개인 (원장 지수민)
- 위탁운영비 : 654,000천원(인건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지원)

합 계	인건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비고
654,000천원	638,000천원	8,000천원	8,000천원	

* 인건비 지급 기준 : 보육교사(원장 포함) - 인건비의 80%,
조리원, 사무원 등 - 인건비의 100%

IV

세부 추진계획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기 간 : 2026. 3. 1. ~ 2031. 2. 28.
- 모집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5. 9월 중 (20일 이상)
- 공고내용 : 【붙임2】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참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0월 중 (7일 이상)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총무과 단체협력팀
- 제출서류 : 【붙임3】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위탁체 신청자격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 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위탁체 선정 심사

1. 위탁체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교육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붙임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제 결과,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2.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 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함

V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 보고(안) 상정 및 보고절차 이행 : '25. 9월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5. 9월 ~ 10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5. 11월
-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5. 12월

[참고자료2]

남동구 공고 제2025 - 호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00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인가일
남동구청 어린이집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1,006.98㎡	92명 (58명)	2001. 6. 1.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기 간 : '26. 03. 01. ~ '31. 02. 28.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5. 09. 00.(0) ~ 2025. 10. 00.(0)

○ 접수기간 : 2025. 10. 00.(0) ~ 2025. 10. 0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5층 총무과 단체협력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 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인천광역시 보육 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제 결과,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교육부)」를 준용 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제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제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제로 선정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제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제 선정 결과는 공고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함
 -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총무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총무과 단체협력팀(☎032-453-6253)에 문의

[참고자료3]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직장어린이집)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남동구청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46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접객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 관리와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조례 적용대상 (안 제3조)
- 옥외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 제6조, 제7조)
- 옥외조리 가능지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식품위생법」 제43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결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고, 구청장은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시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시설개수명령·시정명령·영

업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영업 재개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6조 관련)

1. 추락사고·차량안전사고 방지

가. 난간의 설치 및 안전관리

-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 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차량 안전사고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고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보호 난간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시설물관리

가. 옥외영업장 시설물

- 1)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영업장 신고면적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3)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 4) 옥외영업장에 스피커 등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6)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7) 옥외영업장에는 조리나 세척 등을 위한 조리장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테라스형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장 시설물

- 1)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장의 경우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바닥재료, 단차 및 바닥, 담장, 차양, 의자, 테이블, 기타)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2]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타 법 위반사항이 없는 위치만을 옥외영업 장소로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 등을 취급하는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여야 하며,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단,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 경계면 인근에서 손님 등이 흡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8. 옥외영업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면적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옥외조리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제4조 관련)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서 먼저 확인 후 가능한 장소인 경우에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여부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	☐

☐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도로법」 확인사항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
「주차장법」 확인사항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옥외영업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의 위반(저촉) 사항 발견 시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행정처분 등)를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안전교육국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참고자료]

□ 식품위생법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营业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생략)

13.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생략)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 외 도 시 위 원 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의안 번호	3147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6년 상반기 위탁종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7개소)
- 위탁시설

(2025. 7. 18. 기준)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설치(개원)일	위탁기간 (예정)
개나리	백범로124번길 43, 216동 102호 (만수4동, 만수주공2단지아파트)	88.81㎡	14명 (13명)	1996.03.05.	2026.03.01. ~ 2031.02.28.
꼬마거북	남동대로799번길 34, 관리동 (구월3동, 신영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327.14㎡	35명 (34명)	2021.04.01.	2026.03.01. ~ 2031.02.28.
하늘다솜	남동대로215번길 30, 1층 (논현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67.41㎡	51명 (40명)	2010.07.10. (2010.09.01.)	2026.05.01. ~ 2031.04.30.
가온사랑	선수촌로 27,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6단지)	254.93㎡	37명 (34명)	2016.05.17. (2016.07.11.)	2026.05.17. ~ 2031.05.16.
구월나래	선수촌로 56,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5단지)	243.42㎡	45명 (34명)	2016.05.17. (2016.07.11.)	2026.05.17. ~ 2031.05.16.
늘해랑	선수촌공원로 85,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1단지)	239.35㎡	40명 (36명)	2016.05.17. (2016.07.11.)	2026.05.17. ~ 2031.05.16.
빛솔	선수촌로 8,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8단지)	269.40㎡	45명 (27명)	2016.05.17. (2016.07.11.)	2026.05.17. ~ 2031.05.16.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 어린이집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 소요예산 : 20,262,339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위치도 등

개나리		
꼬마거북		
하늘다솜		
가온사랑		

구월나래		
늘해랑		
빛솔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체)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7개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5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운영지원비는 2025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6년 ~ 2030년
- 비용추계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6년 ~ 2030년(5년)
- 발생비용 : 20,262,339천원 (국60, 시27, 구13)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17,562,479천원, 구비 2,699,860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북지국 보육정책과장 박 미 경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3,329,935	3,418,519	3,509,758	3,603,736	3,700,531	17,562,479
국시비보조금			3,329,935	3,418,519	3,509,758	3,603,736	3,700,531	17,562,479
세 출			3,849,165	3,947,814	4,049,418	4,154,075	4,261,867	20,262,33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3,849,165	3,947,814	4,049,418	4,154,075	4,261,867	20,262,339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329,935	3,418,519	3,509,758	3,603,736	3,700,531	17,562,479
	보 조 금	국비	2,301,119	2,364,399	2,429,576	2,496,709	2,565,854	12,157,657
		시비	1,028,816	1,054,120	1,080,182	1,107,027	1,134,677	5,404,822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19,230	529,295	539,660	550,339	561,336	2,699,860
	구 비		519,230	529,295	539,660	550,339	561,336	2,699,86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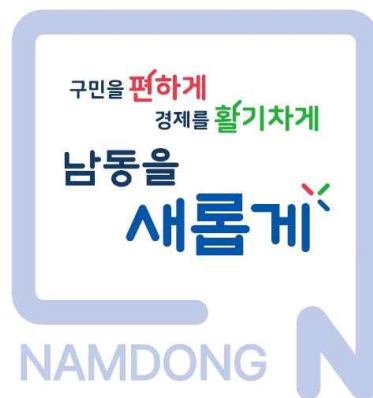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현재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직위별 평균 호봉 기준으로 승급에 따른
인상률(3%) 적용 추산

[참고자료1]

공보육의 품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요 지

구청장 결재 | 나. 주요 시책 ·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7개소)

(2025. 7. 2. 기준)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인가일
1	개나리	백범로124번길 43, 216동 102호 (만수4동, 만수주공2단지아파트)	88.81㎡	14명 (13명)	1996.03.05.
2	꼬마거북	남동대로799번길 34, 관리동 (구월3동, 신영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327.14㎡	35명 (34명)	2021.04.01.
3	하늘다솜	남동대로215번길 30, 1층 (논현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67.41㎡	51명 (40명)	2010.07.10.
4	가온사랑	선수촌로 27,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6단지)	254.93㎡	37명 (34명)	2016.05.17.
5	구월나래	선수촌로 56,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5단지)	243.42㎡	45명 (33명)	2016.05.17.
6	늘해랑	선수촌공원로 85,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1단지)	239.35㎡	40명 (36명)	2016.05.17.
7	빛솔	선수촌로 8,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8단지)	269.40㎡	45명 (27명)	2016.05.17.

- 위탁(예정)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선정

□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3개소* : 개나리, 꼬마거북, 하늘다솜 / 4개소** : 가온사랑, 구월나래, 늘해랑, 빛솔

- 의회 민간위탁 보고(안) 상정 및 보고절차 이행 : '25. 9월(7개소)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5. 9월(3개소*) / 12월(4개소**)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5. 11월(3개소*) / '26. 2월(4개소**)
- 위 · 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5. 12월(3개소*) / '26. 3월(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 ◆ 2026년 상반기 위탁종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 : 7개소

(2025. 7. 2. 기준)

연번	명칭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1	개나리*	백범로124번길 43, 216동 102호 (만수4동, 만수주공2단지아파트)	88.81㎡	14명	13명	정희영 (1회)	2021.03.01.~ 2026.02.28.
2	꼬마거북	남동대로799번길 34, 관리동 (구월3동, 신영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327.14㎡	35명	34명	채현미 (1회)	2021.03.01.~ 2026.02.28.
3	하늘다솜	남동대로215번길 30, 1층 (논현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67.41㎡	51명	40명	이은희 (1회)	2021.05.01.~ 2026.04.30.

연번	명칭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4	가온사랑	선수촌로 27,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6단지)	254.93㎡	37명	34명	김미라 (2회)	2021.05.17.~ 2026.05.16.
5	구월나래	선수촌로 56,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5단지)	243.42㎡	45명	33명	김경애 (2회)	2021.05.17.~ 2026.05.16.
6	늘해랑	선수촌공원로 85,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1단지)	239.35㎡	40명	36명	박은성 (1회)	2021.05.17.~ 2026.05.16.
7	빛솔	선수촌로 8,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8단지)	269.40㎡	45명	27명	이옥선 (2회)	2021.05.17.~ 2026.05.16.

*향후 만수주공아파트 통합 재건축사업 일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위탁(예정)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개 나 리 : '26. 03. 01. ~ '31. 02. 28.
- 꼬마거북 : '26. 03. 01. ~ '31. 02. 28.
- 하늘다솜 : '26. 05. 01. ~ '31. 04. 30.
- 가온사랑 : '26. 05. 17. ~ '31. 05. 16.
- 구월나래 : '26. 05. 17. ~ '31. 05. 16.
- 늘 해 랑 : '26. 05. 17. ~ '31. 05. 16.
- 빛 솔 : '26. 05. 17. ~ '31. 05. 16.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IV 세부 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5. 9월 중 (20일 이상)* / 2025. 12월 중 (20일 이상)**

※ * : 3개소(개나리, 꼬마거북, 하늘다솜) / ** : 4개소(가온사랑, 구월나래, 늘해랑, 빛솔)

○ 공고내용 :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참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9월 중 (7일 이상)* / 2025. 12월 중 (7일 이상)**

※ * : 3개소(개나리, 꼬마거북, 하늘다솜) / ** : 4개소(가온사랑, 구월나래, 늘해랑, 빛솔)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제출서류 :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위탁체 신청자격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 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 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위탁체 선정 심사

1. 위탁체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교육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운영의지, 공모사업 실적, 아동복지업무 경력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2.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함

V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 보고(안) 상정 및 보고절차 이행: '25. 9월(7개소)

【3개소(개나리, 꼬마거북, 하늘다솜)】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5. 9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5.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5. 12월

【4개소(가온사랑, 구월나래, 늘해랑, 빛솔)】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5. 12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6. 2월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6. 3월

[참고자료2]

※ 25년 9월(3개소*), 25년 12월(4개소**)에 각각 공고 예정

(3개소* : 개나리, 꼬마거북, 하늘다솜 / 4개소** : 가온사랑, 구월나래, 늘해랑, 빛솔)

남동구 공고 제2025 - 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인가일
개나리	백범로124번길 43, 216동 102호 (만수4동, 만수주공2단지아파트)	88.81㎡	14명 (13명)	1996.03.05.
꼬마거북	남동대로799번길 34, 관리동 (구월3동, 신영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327.14㎡	35명 (34명)	2021.04.01.
하늘다솜	남동대로215번길 30, 1층 (논현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67.41㎡	51명 (40명)	2010.07.10.
가온사랑	선수촌로 27,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6단지)	254.93㎡	37명 (34명)	2016.05.17.
구월나래	선수촌로 56,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5단지)	243.42㎡	45명 (33명)	2016.05.17.
늘해랑	선수촌공원로 85,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1단지)	239.35㎡	40명 (36명)	2016.05.17.
빛솔	선수촌로 8,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8단지)	269.40㎡	45명 (27명)	2016.05.17.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개 나 리 : '26. 03. 01. ~ '31. 02. 28.
- 꼬마거북 : '26. 03. 01. ~ '31. 02. 28.
- 하늘다솜 : '26. 05. 01. ~ '31. 04. 30.
- 가온사랑 : '26. 05. 17. ~ '31. 05. 16.
- 구월나래 : '26. 05. 17. ~ '31. 05. 16.
- 늘 해 랑 : '26. 05. 17. ~ '31. 05. 16.
- 빛 솔 : '26. 05. 17. ~ '31. 05. 16.

-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 개나리어린이집은 향후 만수주공아파트 통합 재건축사업 일정에 따라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5. 00. 00.(0) ~ 2025. 00. 00.(0)
- 접수기간 : 2025. 00. 00.(0) ~ 2025. 00. 00.(0)
- 접수장소 : 평생학습관 2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 1부, 사본 14부)
 -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 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10
■ 재정능력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교육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제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제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제 선정 결과는 공고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함
-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 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의안 번호	3148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5.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 의거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남동구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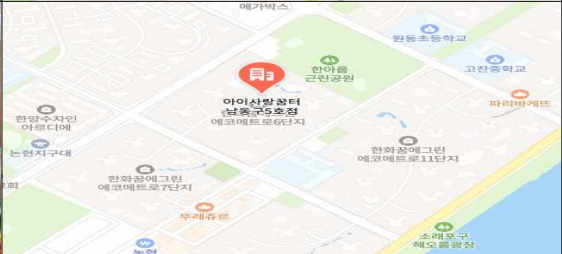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위 탁 명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운영
- 위탁시설

명 칭	소 재 지	시설규모 (㎡)	개소
아이사랑꿈터 2호점	석산로138, 간석어울림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	125.4㎡(38평)	21. 1월
아이사랑꿈터 3호점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1동행 정복지센터 2층	66㎡(20평)	
아이사랑꿈터 4호점	논현로106, 어진마을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지하층	88㎡(26.6평)	
아이사랑꿈터 5호점	아암대로1503번길 98, 에코메트로6단지아파트 1층 주민공동시설	89.96㎡(27평)	
아이사랑꿈터 6호점	장도로86-14, 소래포구어시장 2층	86㎡(26평)	21. 8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 (2년)
- 위탁내용 :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 관리 및 육아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시설관리(안전관리, 위생, 청결 관리 등) 및 운영
- 소요예산 : 924,300천원

□ 위치도

아이사랑꿈터 2호점		
아이사랑꿈터 3호점		
아이사랑꿈터 4호점		
아이사랑꿈터 5호점		
아이사랑꿈터 6호점		

□ 보고사항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 재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보고내용 :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참고자료

- 참고 1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참고 2 : 관련 법령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나. 비용발생 요인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시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 : 2025년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지침
(인건비 인상 등 보조금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연간 인상률 3% 적용)
- 비용추계 범위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1) 추계기간 :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
- 2) 발생비용 : 924,300천원
(인건비 610,038천원, 사업비 147,888천원, 운영비 166,374천원)
※ 2025년 개소별 연간 지원단가 : 88,41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 국비28%, 시비 36%, 구비 36%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91,392	300,160	591,552	
국시비보조금		291,392	300,160	591,552	
세 출		455,300	469,000	924,300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455,300	469,000	924,300	
재원 조달		455,300	469,000	924,300	
의 재 원	소 계		291,392	300,160	591,552
	보조금	국비	127,484	131,320	258,804
		시비	163,908	168,840	332,748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63,908	168,840	332,748
	구비		163,908	168,840	332,748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인건비 인상 등 보조금 상승요인 반영하여 연간 3% 인상률 반영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기간만료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II 추진방향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위탁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III 위탁개요

- ☐ 시설현황

명 칭	소 재 지	시설규모	개소	현운영주체 및위탁기간
아이사랑꿈터 2호점	석산로138, 간석어울림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	125.4㎡(38평)	21. 1월	인천여성 가족재단 '24.01.01. ~ '25.12.31.
아이사랑꿈터 3호점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1동행정복지센터 2층	66㎡(20평)		
아이사랑꿈터 4호점	논현로106, 어진마을아파트 주민공동시설지하층	88㎡(26.6평)		
아이사랑꿈터 5호점	아암대로1503번길 98, 에코메트로6단지아파트1층 주민공동시설	89.96㎡(27평)		
아이사랑꿈터 6호점	장도로86-14, 소래포구어시장 2층	86㎡(26평)	21. 8월	

- 위탁사무 내용 :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 관리(대상자 모집 및 이용자관리, 안전 서약서 사전 고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시설장 등 임용사항, 인력운영
 - 시설관리(안전관리, 위생, 청결관리, 하자관리, 건물화재 보험가입 등) 및 운영
 -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놀이 활동을 위한 교구 및 도서 관리
- 신청자격 : 인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 소요예산 : 924,300천원 (「2025년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연간 인상률 3% 적용)
 - (2026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91,060천원×5개소
 - (2027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93,800천원×5개소

IV

세부추진계획

- 위탁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방법
 - 모 집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자격요건 : 인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및 기타 육아관련기관 운영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및 기타 육아관련 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
 - 신청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타 시·도에 소재하거나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위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을 하려는 자

○ 선정방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사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 심의 후 결정하며,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 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재공고하여 모집함.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함.

□ 위탁기관 선정절차

- | |
|---|
| ① 남동구의회 보고→ ② 공고→ ③ 신청자 접수(법인·단체 등) → ④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⑤ 수탁체 결정 → ⑥ 위탁계약 체결 → ⑦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구 -> 시) |
|---|

□ 추진일정

- 구의회 민간위탁 보고 : 2025. 9월
 -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2025. 9~10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수탁자 선정 : 2025. 11월
 -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025. 12월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위탁 보고(안) 의회 제출 : 2025. 8월
-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및 홍보
 - 홍보실, 정보통신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동 및 타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위탁운영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전국 시·군·구로 공문 발송.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2~6호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안)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2~6호점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월 일

남동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명 칭	소 재 지	시설규모 (㎡)	개소
아이사랑꿈터 2호점	석산로138, 간석어울림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	125.4㎡(38평)	21. 1월
아이사랑꿈터 3호점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1동행정복지센터 2층	66㎡(20평)	
아이사랑꿈터 4호점	논현로106, 어진마을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	88㎡(26.6평)	
아이사랑꿈터 5호점	아암대로1503번길 98, 에코메트로6단지아파트 1층 주민공동시설	89.96㎡(27평)	
아이사랑꿈터 6호점	장도로86-14, 소래포구어시장 2층	86㎡(26평)	21. 8월

2.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

3. 신청자격 및 제외

가. 신청 자격

- 1)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인천에 있어야 함.
- 2) 보육·아동복지사업 및 기타 육아관련 기관 운영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대학 소속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3)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및 기타 육아관련 사업 등 관련 사업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나. 신청 제외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타 시·도에 소재하거나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위탁자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 수탁기관 선정 후 발견 시,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

4.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2~6호점 운영 및 시설 운영관리 전반
- 운영재원 :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및 이용료 등
- 종사자 보수 : 「2025년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지침(인천광역시)」 기준 적용
- 인건비 지급 상한 연령 : 전문인력 만65세, 지원인력 만60세
- 종사자 채용 : 전문인력 및 지원인력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
- 준수사항
 - 시설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아이사랑꿈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 재산(이용료 등)의 활용은 아이사랑꿈터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 관련 법률 및 지침,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 준수
 - 수탁자는 위탁자가 매년 실시하는 아이사랑꿈터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함.

5.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5. 9. 15.(월) ~ 2025. 10. 10.(금)(25일 간)
 - 1개 위탁체만 신청한 경우 5일간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 심사
- 접수기간 : 2025. 9. 29.(월) ~ 2025. 10. 10.(금)(12일 간)
- 신청서 배부 : 남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 고시 공고란 참조
- 접수장소 : 남동구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남동구평생학습관 2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접수(09:00 ~ 18:00)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우편·인터넷 접수불가)

6.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
- 서약서[서식2]
- 위탁운영계획서[서식3]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및 관련서류[서식4]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6]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서식7]
 - ※ 신청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6부로 제출하여 총 17부(A4) 제출(건출지 부착 및 쪽번호 기재)
 - 제출서류 순서별로 편철 후(서식 6, 7 편철 제외) 증빙자료 순서별 별첨
 - 각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 PPT(요약본) : 요약 보고용 자료(USB)를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7.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심사항목					
계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100점	40점	35점	10점	10점	5점

- 심사방법

가. 심사 당일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작성)의 제안설명(10분

- 이내) 및 질의 답변
- 제안설명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설명은 접수순으로 진행
- 나.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 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재공고하여 모집함.
- 다.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수 까지 계산)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라.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전문성, 운영계획, 시설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마. 단독 신청시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단독 신청일 경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자 선정(단,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이거나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의 결과가 전부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재공고하여 선정)
- 바.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의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로 재선정함.

8. 심의일시 및 발표

- 심의일시 : 2025년 11월 중 (추후 일정 별도 통보)
- 위탁대상 선정 발표 : 2025년 11월 중(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9. 위탁계약 체결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동구청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지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의 결정에 따름.

11.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관련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꿈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149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사유

- 구월동 1098-7번지에 위치한 현 구월3동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된 건축물로 공간이 협소(연면적 1,322㎡)하고 노후되어 편의시설 및 주민 자치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상태임.
- 구월동 1455번지 개발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예술회관역 복합개발프로젝트(주)’로부터 구월3동 신축청사 자율적 기부채납 제안 받아 협약을 맺었으며, 공공업무 효율성 증대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복지,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구월동 1098-7 및 1098-8번지, 연면적 약 3,921㎡ * 향후 설계,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경가능)을 계획하고 있음.
- 현 부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인접 도로여건 등에 따른 허용용도 기준상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설치가 불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통하여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제한(규모)을 해소하고자 함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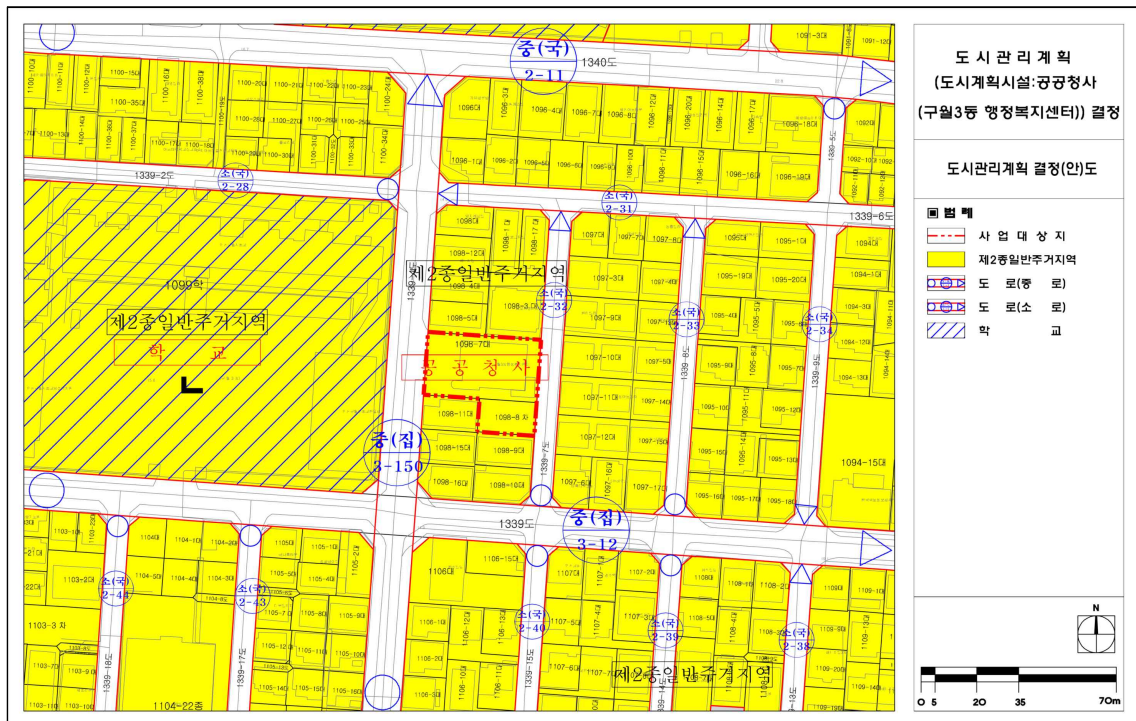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구월동 1098-7,8번지	-	증1,163.9	1,163.9	-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공공청사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 공공청사 신축 · 위치: 구월동 1098-7,8번지 · 면적: 1,163.9㎡	- 노후된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시설이용의 편의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도



□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개요

1. 사업개요(안)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8-7,1098-8번지	
부 지 면 적	◦ 1,163.90㎡	
용 도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 업 규 모	◦ 지하2층, 지상6층	
사 업 비	◦ 12,000백만원	
건 축 면 적	◦ 696.97㎡	
건 폐 율	◦ 59.88% ※ 법적기준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용 적 륜	◦ 244.06% ※ 법적기준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연 면 적	◦ 3,921.02㎡ - 지상층 2,840.66㎡, 지하층 1,080.36㎡	실시설계 및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주 차 대 수	◦ 법정 : 30대(업무시설 3,026.82㎡÷100㎡=30.27) ◦ 계획 : 30대 설치 ※ 법적기준 : 업무시설 100㎡당 1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 건축계획(안)

구 분	내 용
계 획 시설	B2 펌프실, 전기실
	B1 주차장
	1F 행정복지센터, 근로자휴게실, 복지상담실, 주민등록서고, 전산실,동장실
	2F 회의실, 문서고, 민방위창고, 복지창고, 동대장실, 동대본부, 환경미화원휴게실
	3F 주민자치실-1,주민자치실-2, 강의실-1, 강의실-2, 창고
	4F GX룸, 체력단련실
	5F 공유주방, 창고, 커뮤니티공간
	6F 강당, 방송실, 대기실

3.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22. 03. 10. : 구월동 1455번지 개발 사전협상제안(안) 주민의견 청취
 - 노후된 구월3동 청사를 복합청사로 신축 필요 다수 주민의견
- ‘23. 02. 10. : 구월동 1455번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제안
 - 예술회관역 복합개발프로젝트(주) → 구월3동 공공청사 신축하여 남동구로 기부채납
- ‘23. 12. 27. : 기본협약 체결 (區 ⇔ 사업자)
 - 개발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구월3동 복합청사 건립 후 기부채납
- ‘24. 12. 20. : 구월동 1455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 ‘25. 03. 1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5. 03. 14. :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시행(세부)협약 체결
(區 ⇔ 사업자)
- ‘25. 04.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원안가결)
- ‘25. 05.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행
- ‘25. 09. : 도시관리계획 주민·의회 의견청취, 유관기관(부서)협의
- ‘25. 하반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자 측 건축설계 등)
- ‘26. ~ ‘28. : 건축인허가(건축물 해체 신고 등) 및 공사 시행

※ 각종 심의·허가 결과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관련법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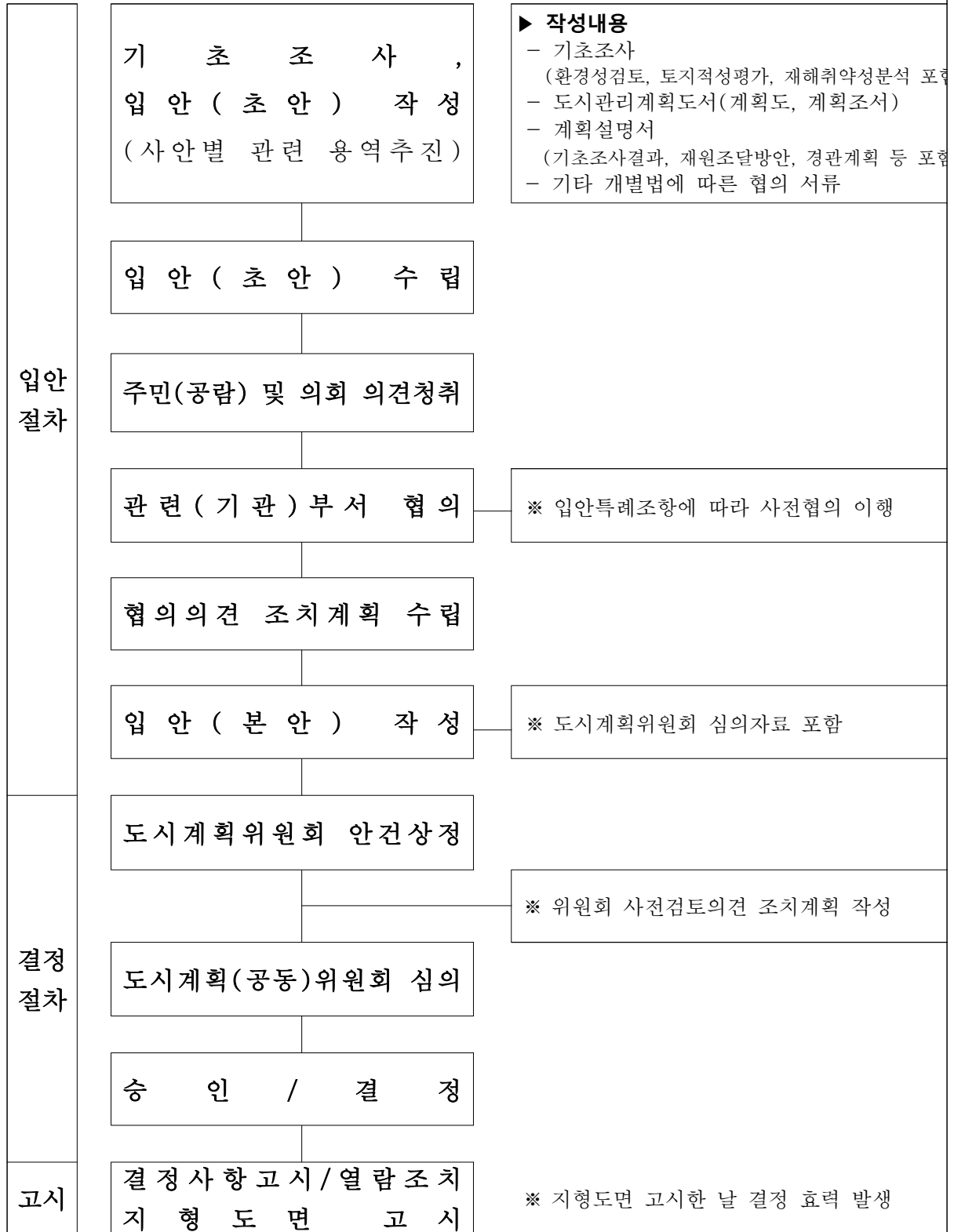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법제43조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법제28조 령제22조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함. ○ 시행령제22조제7항제3호자목: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령제83조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법제13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제84조	☒ 권한의 위임 ○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별표3 1. 가. (4)	☒ 권한위임 사무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무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공공청사(군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으로 한정한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절차



※ 결정절차 상의 유관(기관)부서 협의는 법 제35조 입안특례 조항에 의거 입안절차시 사전협의로 대체

